



2024년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기준정보

2024. 3.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Chungcheongbuk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Chungcheongbukdo Social Service Center

##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5
① 재가 돌봄 및 가사서비스 (기본서비스)	6
② 식사 및 영양관리 지원서비스 (특화 서비스)	12
③ 병원동행 서비스 (특화 서비스)	14
④ 심리지원 서비스 (특화 서비스)	16

본 기준정보는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내용만 담았음



# 2024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기준정보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코드: 990301]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li> </ul>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소득(재산)기준 없음</li> <li>■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 연도 기준을 적용(1990.1.1.~2005.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sup>*24년도 기준</sup></li> </ul> </li> <li>■ 가구특성(육구기준): 해당 사항 없음</li> <li>■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준비청년)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보호종료확인서</li> <li>* (보호연장아동)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li> <li>/ '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li> </ul> </li> <li>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행복이음 서비스의뢰 목록을 통해 확인</li> <li>3. 일반청년</li> </ol> </li> </ul>												
제 공 기 관 제 공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기관:</b>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li> <li>■ <b>제공사 자격기준:</b>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0호)'에 적합한 인력</li> </ul> <p><b>[제공기관 장 자격기준]</b> - 의료법 상 의료인,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p> <p><b>[배치기준(최소 인력기준)]:</b> 제공기관장 1명, 제공인력 A형 2명, B형 1명</p> <table border="1" data-bbox="342 1402 1437 1572"> <thead> <tr> <th>구분</th> <th>A형</th> <th>B형</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제공기관의 장</td> <td>1명</td> <td>1명</td> <td>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td> </tr> <tr> <td>제공인력</td> <td>2명</td> <td>1명</td> <td></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B형 기준 적용</p> <p><b>[제공인력의 자격기준]</b>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인력기준 고시'</p> <p>1) 서비스유형 A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li> <li>다) 임상심리사</li> <li>라) 청소년상담사</li> <li>마)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li> <li>②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li> </ol> </li> </ul>	구분	A형	B형	비고	제공기관의 장	1명	1명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2명	1명	
구분	A형	B형	비고										
제공기관의 장	1명	1명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제공인력	2명	1명											

항 목	내 용															
	<p><b>2) 서비스유형 B형</b>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임상심리사 1급  다)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②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③ 박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p> <p>※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사군에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서류 등으로 확인)</p>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p>■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유형별 가격(회당) 및 제공인력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337 1012 1442 128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가격</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h>제공인력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A형</td> <td>60,000원</td> <td>54,000원</td> <td>6,000원</td> <td>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td> </tr> <tr> <td>B형</td> <td>70,000원</td> <td>63,000원</td> <td>7,000원</td> <td>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td> </tr> </tbody> </table> <p>*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p> <p>■ 서비스 유형 선택  - 이용자 신청 시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이용자는 사전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유형별 제공기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 유형 변경 시 해당 이용자를 차세대 행복이음에서 중지처리 후, 익월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동 사업은 바우처 1회 생성(3개월 이용)되므로 서비스 이용 중간에 등급 및 바우처 변경신청 불가</p> <p>■ 서비스 유형 및 가격 공개  - 지자체 및 지원단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유형 및 가격을 이용자에게 안내</p> <p>■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p>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p>■ 서비스 제공기간: 기본 3개월(총 10회) 원칙</p> <p>■ 바우처 포인트 생성주기: 서비스 지원기간 시작 전 달 말일 22시에 1회 생성</p> <p>■ 재판정 사업 여부: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사후검사 시 상담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사군에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해당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사군 담당자는 신청 사유와 예산액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 재판정 이후 서비스 종료 시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청년센터로 연계</p>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32 401 521 461">종류</th> <th data-bbox="521 401 1190 461">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190 401 1317 461">서비스 횟수</th> <th data-bbox="1317 401 1440 461">회당시간</th> </tr> </thead> </table>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p>사전·사후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li> <li>* 단, 재판정 후 서비스 이용 시(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한정)에는 사전검사를 생략하여 상담서비스 1회로 대체 가능) /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li> </ul>	<p>사전·사후 각 1회</p>	<p>90분</p>	
	<p>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li> <li>- 심리정서적인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예방</li> <li>-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li> <li>-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li> </ul>	<p>총 8회</p>	<p>50분</p>	
<p>종결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마지막 상담 시 포함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li> </ul>	<p>1회</p>	<p>-</p>		
	<p>※ 기본 3개월(10회) 지원, 사전·사후검사로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li> <li>- 2단계: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 사전검사</li> <li>- 3단계: 목표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li> <li>- 4단계: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li> <li>- 5단계: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li> </ul> </li> <li>서비스 제공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li> <li>-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li> <li>-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li> </ul> </li> </ul>				
<p>효 과 성 검 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 사전·사후(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사: 서비스 실시 전,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시행</li> <li>- 사후검사: 종료상담 전 실시</li> </ul> </li> <li>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필수) 심리수준(우울, 불안, 강박 등) 관련 척도: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li> </ul>				
<p>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련 연 유 의 사 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1인의 이용자 이용(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방문(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준: 상담실 33㎡ (단, 서비스유형 B형만 제공하거나, B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할 경우 12㎡)</li> <li>*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li> </ul> </li> <li>※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li> </ul> </li> </ul>				

항 목	내 용
기 타 등 록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li> <li>-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li> <li>-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다음 달 말까지 보강/결제가 가능하고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 인정</li> </ul> </li> <li>■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li> <li>■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li> </ul> </li> </ul>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li> <li>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li> <li>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li> <li>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상책임보험 가입(제공기관에서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li> <li>-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 대비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같음(고용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필요)</li>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안전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을 할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li> </ul> </li> </ol> </li> </ul>

## ②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어려움을 줄이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 (기본서비스)재가돌봄및가사서비스+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삼라지원

※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선택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원칙]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바우처 금액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월 648,000원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월 1,296,000원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월 216,000원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월 432,000원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월 120,000원~250,000원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 ①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및 가사서비스

[사업코드: 800101(돌봄가사 A형)/ 800201(가사 B형)/ 800301(돌봄가사C형)]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 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li> </ul>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소득(재산)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li> <li>■ 연령: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li> <li>■ 가구특성(육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필요 청·중장년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li> <li>- 가족돌봄청년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돌봄 필요 청·중장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가족돌봄청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래 ①, ③을 모두 갖춘 경우</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① 돌봄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li> <li>-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li> </ul> <p>☞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소견서 등</li> <li>(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li> <li>(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li> <li>(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li> </o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li> </ul> <p>☞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소견서 등</li> <li>(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li> <li>(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li> </ol>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②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1인 가구</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실질적 동거 포함)</li> <li>-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li> </ul>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 등</li> </ul> </td> </tr> </tbody> </table> <p>*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사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사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p>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을 모두 갖춘 경우	<p>① 돌봄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li> <li>-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li> </ul> <p>☞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소견서 등</li> <li>(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li> <li>(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li> <li>(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li> </ol>	<p>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li> </ul> <p>☞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소견서 등</li> <li>(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li> <li>(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li> </ol>	<p>②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1인 가구</li> </ul>	<p>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실질적 동거 포함)</li> <li>-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 등</li> </ul>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을 모두 갖춘 경우										
<p>① 돌봄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li> <li>-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li> </ul> <p>☞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소견서 등</li> <li>(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li> <li>(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li> <li>(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li> </ol>	<p>①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li> </ul> <p>☞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소견서 등</li> <li>(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li> <li>(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li> </ol>										
<p>②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1인 가구</li> </ul>	<p>③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실질적 동거 포함)</li> <li>-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동거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li> </ol>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 등</li> </ul>										

항 목	내 용
-----	-----

■ 우선순위

1. 돌봄 필요성이 높은 자
  - ① 혼자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외상환자 등)/ ② 혼자서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고독사 고위험군, 고립은둔자 등
2. 돌봄 상황 및 가구 형태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1인 가구인 경우 / 가족돌봄청년: 단독돌봄자인 경우 우선
3.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4. 기타 시군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 본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대상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4년은 이 용자를 한정하여 운영

[참고]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 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 보험 미 가입자	재직 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 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 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장기 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항 목	내 용
<b>제공기관 및 제공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재가방문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위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li> <li>■ 제공자 자격기준  <b>[제공기관장 자격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방문요양기관의 기관장(관리책임자)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장(관리책임자)을 겸임할 수 있음</li> </ul> <b>[제공인력 자격 기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돌봄·가사서비스(A형, C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li> <li>※ 방문요양기관에 고동된 요양보호사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동시에 종사할 수 있음(단, 제공시간 겹치면 안 됨)</li> <li>-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li> </ul> </li> <li>2) 가사 서비스(B-1, B-2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li> <li>- 상기 '돌봄·가사서비스(A형, C형)' 제공 가능 인력</li> </ul> </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p.73) 인력기준-유형별 배치기준: 재가방문서비스 제공인력 10명 이상 배치(농어촌지역의 경우 3명 이상)</li> <li>※ (지침 p.152) 제공인력 건강관리 책임: 건강진단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제공인력은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li> <li>- 채용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에 한함</li> <li>- 채용 후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에 한함</li> <li>(* 진단항목: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li> </ul> </li> <li>※ <b>제공인력 2인 파견 시범 허용('24 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시범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2인 1조 파견 허용</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 제공인력 2인 파견 관련 세부사항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용범위)</b> 기본서비스에 한함</li> <li>■ <b>(요건)</b> 이용자가 제공인력 위협 및 성희롱 등 전력이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인 경우 등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li> <li>■ <b>(추가 지원금액) 서비스 이용 단가(회당)의 50%,</b> 이용자 1인당 <b>최대</b> 기본서비스 월 지급금액의 50% (A형 : 324,000원/ B-1형 : 108,000원/ B-2형 : 216,000원/ C형 : 648,000원)</li> <li>■ <b>(본인부담)</b> 지원금액 추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 없음 * (예시) 월 총 90만 원(기본 60+추가 30)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60만 원분만 수납</li> <li>■ <b>(제공방법)</b> 바우처 지급이 아닌 해당 제공기관에 지급 (시군구→제공기관)</li> </ul> </div> <p>[배치기준(최소 인력기준):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각 1명(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p> </li></ul>

항 목	내 용
-----	-----

■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 회당 3시간 이용 시 A형 월 12회, B-1형 월 4회, B-2형 월 8회, C형 월 24회 이용 가능

■ 시간당 가격

1) 돌봄·가사 서비스(A형, C형)

[가격(시간당) 기준]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 \* 단, 45분을 2회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 예) 45분 제공→1시간 산정(○), 90분 제공→2시간 산정(X) / 1시간 45분(105분) 제공→2시간 산정(○)
  - 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8시간까지만 지급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외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 가능(30분당 1,500원 내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필수)
- 2) 가사 서비스(B형)
- 시간 당 1만 8천원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li> <li>* 단, 45분을 2회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2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li> <li>예) 45분 제공→1시간 산정(○), 90분 제공→2시간 산정(X) / 1시간 45분(105분) 제공→2시간 산정(○)</li> <li>- 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3시간까지만 지급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li> <li>-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 가능(30분당 1,500원 내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 (이용자 대상 사전 안내 필수)</li> </ul> <p>■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p>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간: 6개월</li> <li>■ 바우처 생성시기: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li> <li>■ 재판정 사업 여부: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li> </ul>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329 929 1409 142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서비스 종류</th> <th>서비스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① 재가돌봄</td> <td>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지원</td> </tr> <tr> <td>② 가사</td> <td>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 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 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td> </tr> <tr> <td>③ 일상지원</td> <td>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상담 및 욕구조사 -초기상담기록지 작성</li> <li>- 2단계: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li> <li>- 3단계: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ex)서비스 제공 내용, 기간, 비용 등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li> <li>- 4단계: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 5단계: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li> </ul> </li> </ul>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 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 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안전 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 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 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효과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사: 서비스 실시 전,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시행</li> <li>- 사후검사: 종료상담 전 실시</li> </ul> </li> <li>■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필수) 사회적고립감, 우울척도(통합적한국판 CES-D) 검사 도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검사 시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 필요 청·중장년의 사회적 고립감 경감 및 우울정도 경감</li> </ul> </li> </ul>								

항 목	내 용
기 타 등 조 및 서비스 제공 관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기준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li> <li>-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li> </ul> </li> <li>■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함</li> <li>- 이용자(이용자 보호자), 제공인력 모두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단, 지체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li> </ul> </li> <li>■ 종결일지 작성·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성</li> <li>■ 등록 신청 시 서비스 연간 매뉴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별지로 작성 제출</li> </ul> </li> </ul>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li> <li>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li> <li>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li> <li>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상책임보험 가입(제공기관에서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li> <li>-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 대비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같음(고용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필요)</li>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안전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을 할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li> </ul> </li> </ol> </li> </ul>

## ②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사업코드: 800401]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li> </ul>																						
제 공 기 관 제 공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기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원상담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b>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li> </ul> </li> <li>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li>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ul> </li> <li>※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가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li> <li>(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li> </ul> </li> <li>배치기준: 기관장 1명+관리책임자 1명</li> </ul>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가격 : 월 257,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li> </ul> <table border="1" data-bbox="337 1373 1409 1625"> <thead> <tr> <th rowspan="2">서비스 종류</th> <th rowspan="2">바우처 총액(월)</th> <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 </tr> <tr> <th>소득수준</th> <th>본인부담금</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td> <td rowspan="4">257,000원</td>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2,850원</td> <td>244,15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20%) 51,400원</td> <td>205,6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77,100원</td> <td>179,9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57,000원</td> <td>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제원칙 : 월1회 결제(월말)</li> </ul>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서 비 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기간 : 6개월</li> <li>바우처 생성시기: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li> <li>재판정 : 5회(총 3년까지) 가능</li> </ul>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2회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li> <li>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li> </ul>																						

항 목	내 용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 지원	- 반찬, 도시락 배달, 안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월 8회 (주 2회)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3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영양보충식 등 고려 등)	
영양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월 1회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월 1회	
효 과 성 검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상담 및 욕구조사 -초기상담기록지 작성</li> <li>- 2단계: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li> <li>- 3단계: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ex)서비스 제공 내용, 기간, 비용 등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li> <li>- 4단계: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 5단계: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필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로 건강한 식생활 및 자립생활 지원</li> </ul> </li> </ul>				
기 타 등 록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기준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li> <li>-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li> </ul> </li> </ul>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li> <li>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li> <li>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li> <li>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상책임보험 가입(제공기관에서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li> <li>-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 대비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같음(고용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필요)</li>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안전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을 할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li> </ul> </li> </ol> </li> </ul>				



### ③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코드: 800501]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이 불편한 청년,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li> </ul>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li> </ul>																						
제 공 기 관 및 제 공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활동보조 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 참여 권장</li> <li>■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제공인력: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li> <li>■ 배치기준: 기관장 1명+관리책임자 1명</li> </ul>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가격 : 월 240,000원 / 시간당 1.5만원(인력 1인 기준) ※ 필요시 제공인력 2명 이상 배치 가능 (단, 투입 인력만큼 시간당 단가 추가 적용) * 45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1시간으로 산정(1.5만원) 15분 이상 45분 미만 제공 시 30분으로 산정(7,500원)</li> <li>▶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li> </ul> <table border="1" data-bbox="337 1368 1446 1620"> <thead> <tr> <th rowspan="2">서비스 종류</th> <th rowspan="2">바우처 총액(월)</th> <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 </tr> <tr> <th>소득수준</th> <th>본인부담금</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td> <td rowspan="4">240,000원 (시간당 1.5만원)</td>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2,000원</td> <td>228,00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20%) 48,000원</td> <td>192,0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72,000원</td> <td>168,0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40,000원</td> <td>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li> </ul>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서 비 스 제 공 기 간 및 재 판 정 여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간 : 6개월</li> <li>■ 바우처 생성시기: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li> <li>■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li> </ul>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li> <li>·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door to door) ※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li> <li>·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li> <li>※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기준 07:00~20:00, 주말 09:00~18:00(단, 주말 이용 가능 여부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li> <li>※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을 권장 (의무성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상담 및 욕구조사 -초기상담기록지 작성</li> <li>- 2단계: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li> <li>- 3단계: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ex)서비스 제공 내용, 기간, 비용 등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li> <li>- 4단계: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 5단계: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li> </ul> </li> </ul>
효과성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필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가족돌봄청년의 대상 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등 지원으로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li> </ul> </li> </ul>
기 타 등 록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기준 및 장비(지침 p.72 시설 및 장비기준: 지원상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서비스 제공공간 33㎡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li> <li>-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li> </ul> </li> </ul>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li> <li>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li> <li>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li> <li>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상책임보험 가입(제공기관에서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li> <li>-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 대비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같음(고용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필요)</li>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안전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을 할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li> </ul> </li> </ol> </li> </ul>

#### ④ (특화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코드: 800601]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li> </ul>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li> </ul>																									
제 공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li> </ul>																									
제 공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인력</li> <li>①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li> <li>③ 임상심리사</li> <li>④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li> <li>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li> </ul> </li> <li>⑤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li> </ul>																									
서비스 가격 및 결제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가격 : 월 240,000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서비스 종류</th> <th rowspan="2">바우처 총액(월)</th> <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 </tr> <tr> <th>소득수준</th> <th>본인부담금</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td> <td rowspan="4">240,000원</td>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2,000원</td> <td>228,00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20%) 48,000원</td> <td>192,0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72,000원</td> <td>168,0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40,000원</td> <td>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li> </ul>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재판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기간 : 6개월</li> <li>바우처 생성시기: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li> <li>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li> </ul>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사후 검사 각 1회</li> <li>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류</th> <th>내용</th> <th>시간</th> <th>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사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BDI등 검사도구 활용)</li> </ul> </li> </ul> </td> <td>회당 90분</td> <td>사전·사후 각 1회</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li> <li>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li> </ul> </li> </ul> </td> <td>회당 50분</td> <td>월 4회 (주 1회)</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li> </ul> </td> <td>회당 100분</td> <td>월 1회 (선택)</td> </tr> </tbody> </table>				종류	내용	시간	횟수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사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BDI등 검사도구 활용)</li> </ul> </li> </ul>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li> <li>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li> </ul> </li> </ul>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li> </ul>	회당 100분	월 1회 (선택)								
종류	내용	시간	횟수																							
기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사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BDI등 검사도구 활용)</li> </ul> </li> </ul>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li> <li>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li> </ul> </li> </ul>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li> </ul>	회당 100분	월 1회 (선택)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상담 및 욕구조사 -초기상담기록지 작성</li> <li>- 2단계: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li> <li>- 3단계: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ex)서비스 제공 내용, 기간, 비용 등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li> <li>- 4단계: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li> <li>- 5단계: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li> </ul> </li> </ul>
<b>효 과 성 검 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사: 서비스 실시 전,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시행</li> <li>- 사후검사: 종료상담 전 실시</li> </ul> </li> <li>■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격, 인성, 정서평가: KPRC, HTP, KFD, SCT 등</li> <li>② 우울, 불안 관련: CDI, RCMAS 등 검사도구 활용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li> </ul> </li> </ul>
<b>기 타 등 록 조 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기준 및 장비(지침 p.72 시설 및 장비기준: 지원상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서비스 제공공간 33㎡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 필요</li> <li>- 공통장비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li> </ul> </li> </ul>
<b>안전관리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안전관리기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 포함</li> <li>2. 안전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교육 실시 (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연2회 이상) 실시</li> <li>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li> <li>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상책임보험 가입(제공기관에서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한 보험 가입)</li> <li>-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 대비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같음(고용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필요)</li> <li>- 서비스 이용자 대상 안전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을 할 경우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li> </ul> </li> </ol> </li> </ul>